

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(안)

(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및 적용지침)

(개발 입력)



선 체 규 칙 개 발 팀

- 주 요 개 정 내 용 -

(1) 2021.07.01일자 시행사항

-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및 적용지침 ()
 - 4장 1절 103.(3)
 - 4장 2절 201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제 4 장 설계조건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설계하중</p> <p>101. ~102. <생략></p> <p>103. 파랑하중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~3 <생략></p> <p>4. 파랑하중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(1) 파랑하중은 가동해역에서의 계획수심에 대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파도이론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물의 모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조시험에 의하여 파랑하중을 구하여도 좋다.</p> <p>(2) 파랑은 구조물에 대한 모든 방향의 파도가 고려되어야 한다.</p> <p>(3) 갑판상에 작용하는 파랑하중, 수면하의 부재에 직접 작용하는 하중, 경사된 상태 또는 구조물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(4) 파도에 의하여 야기되는 진동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< 이하 생략 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제 4 장 설계조건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설계하중</p> <p>101. ~102. <생략></p> <p>103. 파랑하중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~3 <생략></p> <p>4. 파랑하중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(1) 파랑하중은 가동해역에서의 계획수심에 대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파도이론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물의 모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조시험에 의하여 파랑하중을 구하여도 좋다.</p> <p>(2) 파랑은 구조물에 대한 모든 방향의 파도가 고려되어야 한다.</p> <p>(3) 갑판상에 작용하는 파랑하중(그린파랑하중), 수면하의 부재에 직접 작용하는 하중, 경사된 상태 또는 구조물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(4) 파도에 의하여 야기되는 진동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< 이하 생략 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중 용어 명시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장 수밀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폐쇄장치</p> <p>201. 일반 해수가 침입할 염려가 있는 개구의 구조 및 폐쇄장치는 선급 및 강선규칙의 4편 3장 3절 및 국제만채흡수선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반잠수형 구조물에 설치되는 것으로 침수계산의 구획 외에 있고 특별히 고려된 것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 이하 생략 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6 장 수밀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폐쇄장치</p> <p>201. 일반 해수가 침입할 염려가 있는 개구의 구조 및 폐쇄장치는 선급 및 강선규칙의 4편 3장 3절 및 국제만채흡수선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반잠수형 구조물에 설치되는 것으로 침수계산의 구획 외에 있고 특별히 고려된 것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. <u>무인구조물의 경우 출입문 등의 견현갑관상의 의장품에 대하여 수밀 및 풍우밀 유지를 위한 특별한 고려(즉, 이중문 또는 이중잠금장치 설치)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 이하 생략 ></p>	<p>무인구조물의 폐쇄장치 요건 상세 기술</p>